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허가취소 또는 시설물철거 처분을 하고자 할 때의 준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안제11조(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서 점용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 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가액의 5/100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당해 시설물 가액의 10/100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 민원제기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산정기준별 연간 징수액 비교 >

(단위:천원)

구 분	수 량	100/1,000 적용시		50/1,000적용시		
		개당징수액	총 징수액	개당징수액	총 징수액	
가 로 판매대	계	1,661			339,074	170,281
	교 체	173	730	126,290	365	63,145
	미교체	1,488	143	212,784	72	107,136
교통카드	계	487			34,599	17,328
	교 체	57	607	34,599	304	17,328
	미교체	430	운영자 자비로 설치			

○ 안제12조(사무의 위임)와 안제13조(시행규칙)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업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 종합의견입니다.

○ 지난 83년부터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 등의 일환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및 시설물 대부분 허용하여 오면서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장기간 독점적 사용에 따른 특혜시비와 교통혼잡 초래 등 사회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감축관리를 위한 점용허가 및 대부분절차와 갱신 허가 만료기한, 운영자 금지행위 및 점용료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을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세부내용별 검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 운영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용허가 갱신 만료기한을 정하고 있고 향후 보완될 계획으로 있다고는 하나 시설물에 대한 대부분 산정기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등에 대한 민원제기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별첨)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적의원 15명 전원 일치 의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2인 이내로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의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2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2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5. 영 제21조제5항제5호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건설안전관

리본부·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의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자문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3.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항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4.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전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소위원회의 기능 또는 안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하게 한다.

⑤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⑦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회피 및 제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처리기간 및 결과통보)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절차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시장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전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수수료) ①시장은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때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때

②수수료는 위원회 심의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조례 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건당)	비 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심의사항		800,000원	8인×1일×100,000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5항의 심의사항	입찰안내서 심의	800,000원	8인×1일×100,000원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적격 심의 또는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	2개업체 응찰시	4,000,000원	20인×(1일×100,000원+100,000원)
		3개업체부터 4개업체 응찰시	6,000,000원	20인×(2일×100,000원+100,000원)
		5개업체부터 6개업체 응찰시	8,000,000원	20인×(3일×100,000원+100,000원)
		7개이상 업체 응찰시	10,000,000원	20인×(4일×100,000원+10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인×1일×10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인×1일×100,000원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조례에 의한 점용허가의 갱신만료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 경과후 시설물을 제거하여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의 보도이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한다.

안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40조·제75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

물"이라 한다)의 감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상영업시설물"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라 함은 신문·잡지류·음료 및 과자류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라 함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교통카드판매대"라 함은 교통카드의 충전·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운영자"라 함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득하여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를 말한다.